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개정이유

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명칭(안 제2조제4호, 안 제6조, 안 제19조)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(안 제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 위탁 기관 추가(안 제5조)
-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변경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로 만료되어 현행 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이상 운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기금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
- 이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근거법령에 따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
- 현행 조례는 용자대상업체 선정 및 용자금액 결정에 ‘용자심의위원회’ 심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필요시기의 적기를 확보하기 위해 ‘용자심의위원회’ 심의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
-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, 안 제6조, 안 제19조는 근거 법령인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
-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기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」 제4조 제3항와 본 조례 제3조

제3항 후단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,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하였기에 개정 사항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-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금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 효율성이 떨어져 이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‘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’을 추가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
- 안 제12조는 용자대상자 선정에 필요적 절차였던 제13조의 ‘용자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삭제하여 용자대상자 선정 절차를 간소히 하는 개정으로 용자대상자 선정과 기금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됨
- 안 제13조는 ‘용자심의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 사항이었던 제2호 용자대상자 결정 내용을 삭제하여 안 제12조와 체계정합성을 갖추도록 하고, 제3호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, 제4호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여 ‘용자심의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 사항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19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적용 근거인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이 “「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

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10호는 “벤처투자회사”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제3항은 ‘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’라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
- 조례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의 개정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용자대상자 선정 절차의 간소화 등 기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에 용자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(타당성) 본 조례에서는 근거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

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- (종합의견)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

다만, 용자대상자 선정의 필요적 절차였던 ‘용자심의위원회’ 심의가 삭제되었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용자대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용자대상자 적격여부 검토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